

영등포구의회
제 197회 임시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10. 2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166호로 2016년 10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 관련
5개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에 대한
요건을 명시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괄 개정대상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총 5개 조례

나. 주요 개정사항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토록 함
-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담당주사(팀장) 명칭 변경 및 통일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6. 8. 4. ~ 8. 24.)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개의 기금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일괄 개정대상 조례는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임.

○ 주요 내용을 보면

- 1)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사항에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기금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 2) 조직개편시 마다 개정하여야 하는 간사 및 기금출납원 담당공무원의 행정직위 명칭을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기금업무 추진에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함.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30.]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0.>

[제목개정 2015.12.10.]